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11. 24 선고 2020가단14035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7. 12 선고 2021나225204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11. 24 선고 2020가단140350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환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주영

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현

변 론 종 결 2021. 10. 20.

판 결 선 고 2021. 11. 24.

주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피고 B은 강원 철원군 D 대 439㎡ 및 위 지상 연와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72.99㎡에 관하여, 피고 C은 강원 철원군 E 답 2,082.2㎡에 관하여 각 2019. 11. 24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피고들의 부 F(1945년생)과 26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둘 사이에 자녀는 없고, 피고들은 F의 자녀이다.

나. F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은 2019. 2. 폐암 발병 후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나 2020. 6. 24. 사망하였다.

다. 2020. 8. 3. 피고 B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강원 철원군 D 대 439㎡(이하 ‘이 사건 D 토지’라 한다) 및 위 지상 연와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72.99㎡(이하 ‘이 사건 주택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, 피고 C은 강원 철원군 E 답 2,082.2㎡(이하 ‘이 사건 E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주택을 증여하는 취지의 서약서(갑 제2호증)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,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위 서약서에 “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원고에게 등기를 돌려놓아 줄 것을 맹세한다.”라는 기재 및 망인의 성명이 컴퓨터로 작성되어 출력된 부동산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, 망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다.

그러나 앞서 살펴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망인이 위 서약서 작성 당시 폐암으로 투병중이었던 점, 위 서약서에 망인의 자필이 없고 망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 위 서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망인의 인감도장 인영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종합하여 볼 때, 위 서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태지영